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10 호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81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2
○ 공고 제2013-	8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 공고 제2013-	8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공고 제2013-	8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18
○ 공고 제2013-	824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2
○ 공고 제2013-	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3
○ 공고 제2013-	834호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35
○ 공고 제2013-	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25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3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1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5. 3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5. 20 ~ 2012. 5. 30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논고-434	비틀즈광장	김나래	에코중앙로156번길 14, 2층(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4.30	2013.5.30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5. 3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6)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2013년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 관련사항 (안 제4조제1항)
 - 제2호 인원 미달 시 제1호에서 추가 선정 → 삭제
 - 제1호 지역회의 추천 85명 → 85명 이내
 - 제2호 비영리단체, 학계 등 추천 15명 → 15명 이내
 - 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및 신청관련 기존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4항)
 - 다. 분과위원회 조정(안 제9조제1항)
 - 라.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 20명 내외를 25명 이내로 변경(안 제9조제2항)
 - 마. 별지 제1호~제3호, 제5호 서식 변경
4.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6.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5,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3. 5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2013년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 관련사항 (안 제4조제1항)
 - 제2호 인원 미달 시 제1호에서 추가 선정 → 삭제
 - 제1호 지역회의 추천 85명 → 85명 이내
 - 제2호 비영리단체, 학계 등 추천 15명 → 15명 이내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및 신청관련 기존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4항)
- 분과위원회 조정(안 제9조제1항)
-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 20명 내외를 25명 이내로 변경(안 제9조제2항)
- 별지 제1호~제3호, 제5호 서식 변경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5명”을 “85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명”을 “1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이 결정하되”를 “결정하되”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교통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국 소관 과,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2.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주민생활국 소관 과, 보건소,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소관 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제9조제2항 중 “20명 내외”를 “25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공모신청서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문)	생년 월일		학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주소					
	직장 및 전화번호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요 경력						
공모 사유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남동구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추천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문)	생년 월일		학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주소					
	직장 및 전화번호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행정교통 ② 복지문화 ③ 경제환경 ④ 도시개발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별첨 분과별 담당부서 참조)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문)	생년 월일		학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주소					
	직장 및 전화번호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행정교통 ② 복지문화 ③ 경제환경 ④ 도시개발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별첨 분과별 담당부서 참조)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단체장(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위 축 장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 ○ ○ 동 장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인원 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u>다만 제2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제1호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u>	제4조(구성인원 등) ①----- ----- ----- ----- ----- --. <후단 삭제>
1.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u>85명</u>	1. ----- <u>85명 이내</u>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 <u>15명</u>	2. ----- ----- <u>15명 이내</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모집 홍보 및 공고) ①·② (생략)	제5조(모집 홍보 및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u> 은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u>동장</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지역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u>구청장</u>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 ----- ----- <u>동장</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회의 또는 위원회 위원 선정시 제3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u>구청장이 결정하되</u>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연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 ----- ----- <u>결정하되</u>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 ----- -----.
1. 참여자치분과위원회 : 감사실,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민원봉사과, 재난방재과,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1. 행정교통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현행	개정안
2. 재정경제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경제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출장소	2.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주민생활국 소관 과, 보건소,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3. 복지사회분과위원회 : 전략사업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소관 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4. 환경문화분과위원회 : 청소과,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도시공원과, 문화체육과, 남동문화예술회관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한다.	② ----- 25명 이내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1.7.15)와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7.27), 행정안전부(2012.8.3), 인천광역시(2012.8.7)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모집 지원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기준 확보로 통장에 위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나. 임기 만료된 통장들의 위·해촉 시 공개모집 실시로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통장선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통장 위촉 상한연령 제한규정 개정 (안 제5조제2항 제1호)
- 나. 통장 지원자가 없어 위촉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한 연임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 다. 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6.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1. 7. 15)와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 7. 27), 행정안전부(2012. 8. 3), 인천광역시(2012. 8. 7)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모집 지원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기준 확보로 통장에 위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임기 만료된 통장들의 위·해촉 시 공개모집 실시로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통장선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통장 위촉 상한연령 제한규정 개정 (안 제5조제2항제1호)
- 통장 지원자가 없어 위촉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한 연임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 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서”를 “25세 이상 남녀로서”하고, 같은 호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⑤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거 해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주택·빌라·공장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을 위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통·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구청장의</u>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4조(통·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①----- ----- ----- 인천광역시 남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생략)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u>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서</u>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u>자</u> 중에서 위촉한다. 2. ~ 3. (생략) ③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 신분증을 발급한다. <신 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u>25세 이상 남녀로서</u>----- ----- ----- ----- <u>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⑦ ----- ----- ----. ⑤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거 해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주택·빌라·공장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을 위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
- 나. 지상권(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호)
- 다.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 변경(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재산세(주택분) 일괄 부과기준 변경(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과 ☎ 032-453-2363, FAX: 032-453-2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호)
- 지상권(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호)
-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 변경(안 제12조 및 제13조)
- 재산세(주택분) 일괄 부과기준 변경(안 제14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5조제3호로 하며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제5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소유권의 보존</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신 설></u> 2. <u>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u> 가. <u>지상권</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u><단서 신설></u> 나. ~ 마. (생략) 3. (생략) 4. (생략)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u>과세특례</u>의 세율은 1천분의 1.4 로 한다. 제14조(납기) ①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5조(세율) ----- -----. 1. <u>소유권의 보존 등기</u> :----- ----- ----- 2. <u>소유권의 이전 등기</u> 가. <u>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u>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 ----- 가. ----- . <u>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 沮害率),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u> <u>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u> 나.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 3호와 같음) 5. (현행 4호와 같음)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지역분) ----- ----- 도시지역분----- -----. 제14조(납기) ① ----- ----- 10만원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24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 규정을 위반하고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확인결과 폐업사실을 확인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근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 3항(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처분사유	등록말소 일자
보리건설 (주)	전한자	인천 남동구 장자북로 25,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8-10-55) 토공사업 (강원98-02-3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남동 12-11-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2013.04.23 실효 · (재)건설산업정보센터-7339 (2013.05.03)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사업자 폐업사실 확인	2013. 05.08

4.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구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등록말소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동법 제96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kicon.net/>),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 나.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 기반의 행정 서비스와 참여환경을 제공하고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 제정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
- 나.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5조)
- 다. 행정콘텐츠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3조)
- 라.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9조)
- 마. 소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부터 제31조)

4.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60, FAX 453-21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 (www.namdong.go.kr) / 고시공고)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5월 22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 기반의 행정 서비스와 참여환경을 제공하고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
-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5조)
- 행정콘텐츠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3조)
-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9조)
- 소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부터 제3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소통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2조,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소셜ID”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 소셜채널 안에서 특정 이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셜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행정콘텐츠”라 함은 공공정보·행정정보 및 각종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콘텐츠의 형태로 가공·편집 하여 소셜미디어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8. “소셜기자”라 함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9. “소셜댓글”이라 함은 소셜ID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 함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의견수렴,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5조(소셜미디어의 개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시정·구청·동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4. 주민의견·투고 및 반사회 소식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기타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민간 전문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전문가의 위촉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간 전문가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게시물의 관리) ①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부서의 장 또는 기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구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소셜ID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ID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ID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ID 또는 동일 소셜ID 라고 인정되는 소셜ID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제10조(소셜 주민 행정참여)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모니터요원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 소셜공간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주민 연대를 위한 소통공간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소셜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생단체·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간 상호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 및 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사용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소셜미디어는 국제 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5조(소셜미디어의 보안)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콘텐츠 등의 손상, 파괴, 소셜채널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내려받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콘텐츠 생성 및 관리

제16조(명칭)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방송·앨범·신문 등의 신규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주민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쉽도록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발행인)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모든 행정콘텐츠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발행주기) 구청장은 행정콘텐츠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콘텐츠의 저작권)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행정콘텐츠는 CCL (creative common lisence)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다른 이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의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에 별도 표시한 저작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소셜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의 자료를 수집하고 구의 고유한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기자는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소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원고료 지급) 구청장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콘텐츠와 소셜기자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소셜기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기획회의 참석 등 오프라인상의 기자 활동 참여 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제24조(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신규 행정콘텐츠의 발굴, 소셜채널의 개설 및 폐지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주민전달 및 이해촉진 방안
3.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의 여론 및 의견수렴 방안
4. 소셜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소셜기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주민 행정참여 관련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7.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셜미디어 기반의 구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본청의 부구청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소셜미디어·언론·주민자치 및 구정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미디어·콘텐츠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자 1명
-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셜부서의 소셜업무 담당이 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소셜민원의 처리

제30조(소셜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셜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채널을 활용하여 제1항의 소셜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 ① 민원인은 소셜ID를 이용하여 남동구가 운영하는 소셜채널에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셜댓글과 같이 민원인의 소셜ID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경우 블로그나 다른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34호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 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3. 5. 24 ~ 2013. 6. 12 (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별 첨 참 조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 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명단

연번	차량번호	차 종	소유자	주 소
2013-45	서울51누1234	비스토	서** (주)카오리온	서울 마포구 망원로 7길 31-19, 서원빌라 ***호
54	경기78고2129	이스타나	하*공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15, 고충주공@108/ ***호
55	94무5298	와이드봉고	이*열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33번길 3-1, **호
57	인천70마4461	프레지오	이*남	인천 남구 재념이길61번길17-13, 아트홈빌라 B/***호
58	15허1116	그랜저TG	최** (주)금호렌트카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77번길 **
59	73두7914	그레이스	강*혁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51번길 21-1, 419/ ***호
70	64더4126	스펙트라웁	연** (주)신신익스프레스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35번길 17-14, ***호
77	45모3508	그랜저XG	김*원	인천 연수구 새말로 69번길 22-8, ***호
78	03머5503	EF소나타	조*국	서울 중랑구 면목로 92라길 **
82	48루5061	마티즈	천** (주)한독환경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232번길 18, **호
90	06로7524	카니발	이** (주)정연산업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87번길 **
92	인천1더8577	르망	최*수	경남 통영시 선금산2길 28, 대우공원@나/****호
94	서울4호2430	프린스	박*운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7가길 14-*
95	58라6160	티뷰론	김*복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부영@107/***호
96	86어1806	룩스타R2	윤** (주)스파인텍	강원도 춘천시 춘추로 195번길 **
97	인천31노5834	소나타	최*욱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46-1, ***호
98	인천31러3054	포텐샤	최*양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2번길 10-*
101	서울36허8906	다이너스티	오** (주)현대렌트카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7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 사업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운연·수산·만수동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변경 없음) : 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나. 명 칭(변경 없음)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규 모(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B=20m, L=1,670m

○ 중로 1-326호선 : B=20m, L= 900m

○ 중로 2-613호선 : B=15m, L= 300m

나. 면 적(변경 있음)

기 정	변 경	변경후
111,232.7㎡	감) 3,442㎡	107,79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있음)

노선명	기 정	변 경
중로1-325호선	2010.05.20~2014.08.31	2010.05.20~2014.12.31
중로1-326호선	2010.05.20~2014.08.31	2010.05.20~2016.12.31
중로2-613호선	2010.05.20~2013.12.31	2010.05.20~201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변경 있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장 소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8.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배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중로1-325호선)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195-71	195-71	답	답	390	390	390	390	양*정	인천남동구만수동109-257 월드빌라8-비02
1-1	195-99	195-99	답	답	165	165	165	165	양*정	인천남동구만수동109-257 월드빌라8-비02
2	195-76	195-76	답	답	15	15	15	15	정*옥	인천서구석남동561-14유성 주택1동201호
3	195-81	195-81	임	임	70	70	70	70	국	산림청
4	195-83	195-83	답	답	17	17	17	17	공	인천광역시
5	195-27	195-27	답	답	135	135	135	135	국	재경부
5-1	195-94	195-94	답	답	205	205	205	205	국	재경부
6	195-23	195-23	답	답	11	11	11	11	국	건설교통부
6-1	195-93	195-93	답	답	400	400	400	400	국	건설교통부
7	195-78	195-78	답	답	23	23	23	23	공	인천광역시
8	195-39	195-39	답	답	95	95	95	95	국	건설교통부
8-1	195-95	195-95	답	답	3	3	3	3	국	건설교통부
9	195-2	195-2	도	도	13	13	13	13	국	건설교통부
9-1	195-91	195-91	도	도	4	4	4	4	국	건설교통부
10	195-79	195-79	답	답	2	2	2	2	국	건설교통부
10-1	195-110	195-110	답	답	10	10	10	10	국	건설교통부
11	195-80	195-80	답	답	4	4	4	4	국	건설교통부
11-1	195-111	195-111	답	답	14	14	14	14	국	건설교통부
12	195-82	195-82	답	답	25	25	25	25	공	인천광역시
12-1	195-112	195-112	답	답	43	43	43	43	공	인천광역시
13	195-26	195-26	답	답	3	3	3	3	공	인천광역시
14	196-14	196-14	답	답	88	88	88	88	공	인천광역시
15	196-13	196-13	답	답	19	19	19	19	공	인천광역시
17	196-12	196-12	제	제	265	265	265	265	공	인천광역시
18	198-12	198-12	답	답	15	15	15	15	공	인천광역시
19	199-3	199-3	답	답	52	52	52	52	공	인천광역시
20	503-18	503-18	천	천	401	401	401	401	국	건설교통부

20-1	503-29	503-29	천	천	272	272	272	272	국	건설교통부
21	201-3	201-3	답	답	63	63	63	63	공	인천광역시
22	203-4	203-4	답	답	71	71	71	71	공	인천광역시
23	214	214	답	답	210	210	210	210	오*영	291
23-1	214-5	214-5	답	답	668	668	668	668	오*영	291
24	214-4	214-4	제	제	164	164	164	164	공	인천광역시
25	213-2	213-2	답	답	16	16	16	16	공	인천광역시
26	195-73	195-73	전	전	34	34	34	34	김*호	인천남구청학동연수택지개발지구44블럭서해아파트102동1204호
26-1	195-102	195-102	전	전	5	5	5	5	김*호	인천남구청학동연수택지개발지구44블럭서해아파트102동1204호
27	195-77	195-77	전	전	229	229	229	229	국	산림청
27-1	195-105	195-105	전	전	4	4	4	4	국	산림청
27-2	195-106	195-106	전	전	600	600	600	600	국	산림청
28	195-72	195-72	전	전	416	416	416	416	*	인천동구송림동146-5
28-1	195-100	195-100	전	전	1	1	1	1	*	인천동구송림동146-5
28-2	195-101	195-101	전	전	784	784	784	784	*	인천동구송림동146-5
29	산9-8	산9-8	임	임	1,618	1,618	1,618	1,618	국	산림청
29-1	산9-10	산9-10	임	임	2,470	2,470	2,470	2,470	국	산림청
29-2	산9-11	산9-11	임	임	374	374	374	374	국	산림청
30	195-1	195-1	전	전	3	3	3	3	박*복	인천남동구서창동292
30-1	195-89	195-89	전	전	4	4	4	4	박*복	인천남동구서창동292
30-2	195-90	195-90	전	전	99	99	99	99	박*복	인천남동구서창동292
31	195-22	195-22	전	전	24	24	24	24	국	기획재정부
31-1	195-92	195-92	전	전	5	5	5	5	국	기획재정부
32	산10-4	산10-4	임	임	280	280	280	280	국	산림청
33	산10-5	산10-5	도	도	16	16	16	16	국	산림청
34	195-70	195-70	도	도	86	86	86	86	국	건설교통부
34-1	195-98	195-98	도	도	1	1	1	1	국	건설교통부
35	195-75	195-75	도	도	201	201	201	201	국	건설교통부
35-1	195-103	195-103	도	도	329	329	329	329	국	건설교통부
35-2	195-104	195-104	도	도	1,170	1,170	1,170	1,170	국	건설교통부
36	197-4	197-4	도	도	17	17	17	17	국	건설교통부

37	195-85	195-85	답	답	352	352	352	352	공	인천광역시
37-1	195-107	195-107	답	답	66	66	66	66	공	인천광역시
37-2	195-108	195-108	답	답	257	257	257	257	공	인천광역시
39	195-69	195-69	전	전	251	251	251	251	김*애	인천남동구만수동1045한국아파트104동1302호
39-1	195-96	195-96	전	전	101	101	101	101	김*애	인천남동구만수동1045한국아파트104동1302호
39-2	195-97	195-97	전	전	408	408	408	408	김*애	인천남동구만수동1045한국아파트104동1302호
39-3	195-109	195-109	전	전	11	11	11	11	김*애	인천남동구만수동1045한국아파트104동1302호
40	196-3	196-3	답	답	606	606	606	606	박*술	인천남구용현동577-77
									공	인천광역시
40-1	196-18	196-18	답	답	514	514	514	514	박*술	인천남구용현동577-77
									공	인천광역시
41	197-3	197-3	답	답	1,731	1,731	1,731	1,731	원*순	인천남구주안동503-2
									박*산	인천남구주안동1453-24
41-1	197-5	197-5	답	답	290	290	290	290	원*순	인천남구주안동503-2
									박*산	인천남구주안동1453-24
42	196-2	196-2	전	전	595	595	595	595	이*익	인천남동구서창동63
42-1	196-17	196-17	전	전	466	466	466	466	이*익	인천남동구서창동63
43	196-1	196-1	전	전	798	798	798	798	김*식	인천남동구만수동101-14
43-1	196-15	196-15	전	전	23	23	23	23	김*식	인천남동구만수동101-14
43-2	196-16	196-16	전	전	866	866	866	866	김*식	인천남동구만수동101-14
44	198-8	198-8	전	전	632	632	632	632	정*진	인천남동구서창동63
44-1	198-13	198-13	전	전	15	15	15	15	정*진	인천남동구서창동63
45	198-9	198-9	전	전	296	296	296	296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마을2602동201호
45-1	198-10	198-10	전	전	152	152	152	152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마을2602동201호
45-2	198-14	198-14	전	전	192	192	192	192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마을2602동201호
46	198-11	198-11	전	전	156	156	156	156	정*진	인천남동구서창동63
46-1	198-15	198-15	전	전	82	82	82	82	정*진	인천남동구서창동63
46-2	198-16	198-16	전	전	670	670	670	670	정*진	인천남동구서창동63
47	199-2	199-2	전	전	379	379	379	379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마을2602동201호
47-1	199-4	199-4	전	전	79	79	79	79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마을2602동201호

47-2	199-5	199-5	전	전	450	450	450	450	이*웅	부천시원미구상동570-1하안 마을2602동201호
48	520-3	520-3	도	도	24	24	24	24	국	건설교통부
48-1	520-4	520-4	도	도	38	38	38	38	국	건설교통부
48-2	520-5	520-5	도	도	116	116	116	116	국	건설교통부
49	201-2	201-2	전	전	468	468	468	468	김*순	인천남동구서창동54
									윤*주	인천서구석남동538-27
49-1	201-4	201-4	전	전	148	148	148	148	김*순	인천남동구서창동54
									윤*주	인천서구석남동538-27
49-2	201-5	201-5	전	전	1,758	1,758	1,758	1,758	김지순	인천남동구서창동54
									윤*주	인천서구석남동538-27
50	202-1	202-1	전	전	72	72	72	72	윤*주	인천서구석남동538-27
									김*순	인천남동구서창동54
50-1	202-2	202-2	전	전	133	133	133	133	윤*주	인천서구석남동538-27
									김*순	인천남동구서창동54
51	204-1	204-1	전	전	71	71	71	71	하*수	부평구부개동499-2푸른마을 한신아파트111동704호
51-1	204-2	204-2	전	전	30	30	30	30	하*수	부평구부개동499-2푸른마을 한신아파트111동704호
52	203-3	203-3	전	전	174	174	174	174	황*성	인천남동구구월동260-5동아 아파트3동602호
52-1	203-5	203-5	전	전	41	41	41	41	황*성	인천남동구구월동260-5동아 아파트3동602호
52-2	203-6	203-6	전	전	12	12	12	12	황*성	인천남동구구월동260-5동아 아파트3동602호
52-3	203-7	203-7	전	전	685	685	685	685	황*성	인천남동구구월동260-5동아 아파트3동602호
53	213-3	213-3	답	답	906	906	906	906	서*태	인천남동구운연동259-1
53-1	213-4	213-4	답	답	9	9	9	9	서*태	인천남동구운연동259-1
53-2	213-5	213-5	답	답	46	46	46	46	서*태	인천남동구운연동259-1
53-3	213-6	213-6	답	답	1,864	1,864	1,864	1,864	서*태	인천남동구운연동259-1
54	215-5	215-5	답	답	156	156	156	156	공	인천광역시
55	215	215	답	답	6	6	6	6	공	인천광역시
55-1	215-6	215-6	답	답	6	6	6	6	공	인천광역시
56	216-4	216-4	제	제	285	285	285	285	김*순	인천 북구 작전동 129
									김*실	인천 북구 작전동 129
									김*수	인천 북구 작전동 164
									공	인천광역시

56-1	216-8	216-8	제	제	3	3	3	3	김*순	인천 북구 작전동 129
									김*실	인천 북구 작전동 129
									김*수	인천 북구 작전동 164
									공	인천광역시
57	219	219	전	전	3	3	3	3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57-1	219-2	219-2	전	전	85	85	85	85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58	219-1	219-1	답	답	21	21	21	21	공	인천광역시
59	218-2	218-2	전	전	368	368	368	368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59-1	218-3	218-3	전	전	32	32	32	32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59-2	218-4	218-4	전	전	683	683	683	683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60	218-1	218-1	답	답	97	97	97	97	공	인천광역시
61	522-1	522-1	도	도	42	42	42	42	국	건설교통부
61-1	522-2	522-2	도	도	7	7	7	7	국	건설교통부
61-2	522-3	522-3	도	도	53	53	53	53	국	건설교통부
62	220-2	220-2	답	답	40	40	40	40	공	인천광역시
63	221-3	221-3	답	답	11	11	11	11	김*복	경기안산상록구장상동368-2
63-1	221-4	221-4	전	전	697	697	697	697	김*복	경기안산상록구장상동368-2
63-2	221-5	221-5	답	답	3	3	3	3	김*복	경기안산상록구장상동368-2
63-3	221-6	221-6	답	답	1,316	1,316	1,316	1,316	김*복	경기안산상록구장상동368-2
64	221-2	221-2	답	답	36	36	36	36	공	인천광역시
65	503-14	503-14	천	천	430	430	430	430	국	건설교통부
65-1	503-15	503-15	천	천	244	244	244	244	국	건설교통부
65-2	503-16	503-16	천	천	91	91	91	91	국	건설교통부
65-3	503-17	503-17	천	천	92	92	92	92	국	건설교통부
65-4	503-27	503-27	천	천	162	162	162	162	국	건설교통부
65-5	503-28	503-28	천	천	205	205	205	205	국	건설교통부
66	221-1	221-1	답	답	2	2	2	2	공	인천광역시
67	229-9	229-9	답	답	195	195	195	195	공	인천광역시
68	229-7	229-7	답	답	59	59	59	59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68-1	229-8	229-8	전	전	500	500	500	500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68-2	229-10	229-10	답	답	953	953	953	953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70	228-6	228-6	도	도	83	83	83	83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70-1	228-8	228-8	도	도	5	5	5	5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70-2	228-9	228-9	도	도	92	92	92	92	이*인	인천남동구만수동866-4
71	230-14	230-14	답	답	79	79	79	79	공	인천광역시
72	230-12	230-12	답	답	130	130	130	130	정*인	인천남구주안동1557-81상 성로즈빌 비-202
72-1	230-18	230-18	답	답	59	59	59	59	정*인	인천남구주안동1557-81상 성로즈빌 비-202
72-2	230-19	230-19	답	답	320	320	320	320	정*인	인천남구주안동1557-81상 성로즈빌 비-202
73	230-13	230-13	답	답	59	59	59	59	공	인천광역시
74	230-11	230-11	답	답	158	158	158	158	정*인	인천남동구운연동282-3
74-1	230-16	230-16	답	답	70	70	70	70	정*인	인천남동구운연동282-3
74-2	230-17	230-17	답	답	372	372	372	372	정*인	인천남동구운연동282-3
75	230-10	230-10	답	답	66	66	66	66	정*인	인천남동구운연동282-3
75-1	230-15	230-15	답	답	72	72	72	72	정*인	인천남동구운연동282-3
76	232-1	232-1	전	전	400	400	400	400	김*상	인천남동구만수동1048금호 아파트102동1201호
76-1	232-2	232-2	전	전	1,126	1,126	1,126	1,126	김*상	인천남동구만수동1048금호 아파트102동1201호
77	231	231	답	답	351	351	351	351	변*자	인천남동구만수동1048금호 아파트102동1201호
77-1	231-4	231-4	답	답	388	388	388	388	변*자	인천남동구만수동1048금호 아파트102동1201호
78	231-3	231-3	제	제	351	351	351	351	공	인천광역시
79	233-6	233-6	답	답	291	291	291	291	서*하	인천남동구운연동287-5
79-1	233-10	233-10	답	답	554	554	554	554	서*하	인천남동구운연동287-5
80	233-5	233-5	답	답	295	295	295	295	최*자	인천남동구운영동32-3
80-1	233-8	233-8	답	답	23	23	23	23	최*자	인천남동구운영동32-3
80-2	233-9	233-9	답	답	774	774	774	774	최*자	인천남동구운영동32-3
81	233-7	233-7	답	답	81	81	81	81	공	인천광역시외1인
82	234-7	234-7	전	전	212	212	212	212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82-1	234-9	234-9	전	전	427	427	427	427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82-2	234-10	234-10	전	전	1,343	1,343	1,343	1,343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83	235-6	235-6	전	전	70	70	70	70	최*노	인천남동구논현동563-3 논 현주공아파트207동704호
83-1	235-9	235-9	전	전	183	183	183	183	최*노	인천남동구논현동563-3 논 현주공아파트207동704호
83-2	235-10	235-10	전	전	313	313	313	313	최*노	인천남동구논현동563-3 논 현주공아파트207동704호
84	235-7	235-7	답	답	80	80	80	80	공	인천광역시
84-1	235-8	235-8	전	전	106	106	106	106	공	인천광역시
85	506-4	506-4	도	도	24	24	24	24	국	건설교통부
85-1	506-5	506-5	도	도	52	52	52	52	국	건설교통부
85-2	506-6	506-6	도	도	23	23	23	23	국	건설교통부
85-3	506-7	506-7	도	도	54	54	54	54	국	건설교통부
85-4	506-8	506-8	도	도	53	53	53	53	국	건설교통부
85-5	506-9	506-9	도	도	85	85	85	85	국	건설교통부
86	84-5	84-5	답	답	6	6	6	6	공	인천광역시
87	84-4	84-4	답	답	138	138	138	138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87-1	84-7	84-7	답	답	395	395	395	395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88	83	83	천	천	33	33	33	33	공	인천광역시
89	83-3	83-3	천	천	12	12	12	12	공	인천광역시
90	82-2	82-2	천	천	220	220	220	220	공	인천광역시
90-1	82-6	82-6	천	천	174	174	174	174	공	인천광역시
91	80-1	80-1	전	전	87	87	87	87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91-1	80-2	80-2	전	전	110	110	110	110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91-2	80-3	80-3	전	전	468	468	468	468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91-3	80-4	80-4	전	전	803	803	803	803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92	81	81	전	전	39	39	39	39	조*개	인천남동구만수동1028-10
92-1	81-1	81-1	전	전	26	26	26	26	조*개	인천남동구만수동1028-10
92-2	81-2	81-2	전	전	589	589	589	589	조*개	인천남동구만수동1028-10

93	82-4	82-4	천	천	86	86	86	86	공	인천광역시
95	82	82	천	천	138	138	138	138	공	인천광역시
95-1	82-5	82-5	천	천	68	68	68	68	공	인천광역시
96	63-1	63-1	답	답	268	268	268	268	서*범	인천남동구운연동257-1
96-1	63-2	63-2	답	답	10	10	10	10	서*범	인천남동구운연동257-1
96-2	63-3	63-3	답	답	548	548	548	548	서*범	인천남동구운연동257-1
99	496-5	496-5	구	구	48	48	48	48	국	농림부
99-1	496-6	496-6	구	구	46	46	46	46	국	농림부
99-2	496-7	496-7	구	구	125	125	125	125	국	농림부
100	62-3	62-3	답	답	311	311	311	311	최*천	인천남동구운연동20-13
100-1	62-4	62-4	답	답	281	281	281	281	최*천	인천남동구운연동20-13
101	61-2	61-2	답	답	83	83	83	83	최*조	인천남동구운연동40-4
101-1	61-3	61-3	답	답	130	130	130	130	최*조	인천남동구운연동40-4
101-2	61-4	61-4	답	답	641	641	641	641	최*조	인천남동구운연동40-4
102	58-9	58-9	전	전	170	170	170	170	배*산	인천서구가정동523-7
102-1	58-12	58-12	전	전	107	107	107	107	배*산	인천서구가정동523-7
102-2	58-13	58-13	전	전	492	492	492	492	배*산	인천서구가정동523-7
103	98-9	98-9	전	전	17	17	17	17	공	인천광역시
104	98-3	98-3	전	전	62	62	62	62	김*규	인천남동구운연동291
									배*일	수원권선구구운동462삼환아파트3동1208호
105	495-5	495-5	천	천	65	65	65	65	국	건설교통부
105-3	495-8	495-8	천	천	21	21	21	21	국	건설교통부
105-4	495-11	495-11	천	천	106	106	106	106	국	건설교통부
105-7	495-15	495-15	천	천	20	20	20	20	국	건설교통부
105-8	495-16	495-16	천	천	91	91	91	91	국	건설교통부
106	99-5	99-5	전	전	17	17	17	17	공	인천광역시
107	99-2	99-2	전	전	202	202	202	202	공	인천광역시
107-1	99-7	99-7	전	전	89	89	89	89	공	인천광역시
108	99-6	99-6	전	전	45	45	45	45	공	인천광역시

109	501-3	501-3	도	도	2	2	2	2	국	건설교통부
110	494-7	494-7	천	천	167	167	167	167	국	건설교통부
110-1	494-9	494-9	천	천	529	529	529	529	국	건설교통부
111	15-40	15-40	전	전	1	1	1	1	공	인천광역시
113	215-2	215-2	답	답	9	9	9	9	공	인천광역시
114	213-1	213-1	답	답	2	2	2	2	공	인천광역시
115	216-3	216-3	답	답	309	309	309	309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61
									김*익	인천북구작전동127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33
									김*순	인천북구작전동129
									김*실	인천북구작전동160
									김*의	인천계양구작전동694-8
									김*수	인천부평구부평동284-16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64
115-1	216-5	216-5	답	답	2	2	2	2	김광수	인천북구작전동161
									김*익	인천북구작전동127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33
									김*순	인천북구작전동129
									김*실	인천북구작전동160
									김*의	인천계양구작전동694-8
									김*수	인천부평구부평동284-16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64
115-2	216-6	216-6	답	답	9	9	9	9	김광수	인천북구작전동161
									김*익	인천북구작전동127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33
									김*순	인천북구작전동129
									김*실	인천북구작전동160
									김*의	인천계양구작전동694-8
									김*수	인천부평구부평동284-16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64
115-3	216-7	216-7	답	답	777	777	777	777	김광수	인천북구작전동161
									김*익	인천북구작전동127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33

									김*순	인천북구작전동129
									김*실	인천북구작전동160
									김*의	인천계양구작전동694-8
									김*수	인천부평구부평동284-16
									김*수	인천북구작전동164
116	220	220	전	전	12	12	12	12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116-1	220-3	220-3	전	전	13	13	13	13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116-2	220-4	220-4	전	전	225	225	225	225	박*자	인천남동구만수동956-1
117	234-8	234-8	제	제	260	260	260	260	공	인천광역시
118	235-11	235-11	전	전	212	212	212	212	한*길	인천연수구청학동455하나아파트103동406호
118-1	235-12	235-12	전	전	485	485	485	485	한*길	인천연수구청학동455하나아파트103동406호
119	84-6	84-6	답	답	183	183	183	183	강*철	인천남구주안동547-7
119-1	84-8	84-8	전	전	213	213	213	213	강*철	인천 남구 주안동 547-7
120	65-3	65-3	답	답	115	115	115	115	김*남	인천남구주안동 448-1
121	60-1	60-1	전	전	107	107	107	107	이*하	인천남동구만수동 5-179
121-1	60-2	60-2	전	전	84	84	84	84	이*하	인천 남동구 만수동 5-179
122	58-7	58-7	전	전	212	212	212	212	배*산	인천서구가정동523-7
122-1	58-11	58-11	전	전	192	192	192	192	배*산	인천 서구 가정동 523-7
123	503-13	503-13	천	천	383	383	383	383	국	건설교통부
123-1	503-25	503-25	천	천	74	74	74	74	국	건설교통부
123-2	503-26	503-26	천	천	1,668	1,668	1,668	1,668	국	건설교통부
124	58-6	58-6	전	전	476	476	476	476	배*식	인천 남동구 운연동 38
124-1	58-10	58-10	전	전	210	210	210	210	배*식	인천 남동구 운연동 38
125	78-1	78-1	전	전	13	13	13	13	김*중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81-3
126	228-7	228-7	전	전	8	8	8	8	이*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1 하얀마을2602동 201호
127	57-14	57-14	전	전	1	1	1	1	박*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6-2
소 계							60,201	60,20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중로1-326호선)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용지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	492	-	전	-	1,005	-	103	추*호	인천남동구운연동415	
2	492-3	492-3	전	전	52	52	52	52	추*호	인천남동구운연동415	1
3	492-4	492-4	전	전	26	26	26	26	추*호	인천남동구운연동415	1-1
4	-	491	-	전	-	1,253	-	25	이*주	인천남동구운연동43-3	
5	491-2	491-2	답	답	924	924	924	761	이*주	인천남동구운연동43-3	2
6	491-4	491-4	답	답	1,215	1,215	1,215	1,215	이*주	인천남동구운연동43-3	2-2
7	519-3	519-3	도	도	73	73	73	49	국	건설교통부	4
8	519-5	519-5	도	도	305	305	305	305	국	건설교통부	4-2
9	489-30	489-30	답	답	1,110	1,110	1,110	677	최*산	인천남동구만수동474-2	5
10	489-40	489-40	답	답	690	690	690	690	최*산	인천남동구만수동474-2	5-1
11	489-29	489-29	답	답	742	742	742	393	김*진	인천남동구운연동257-1	6
12	489-39	489-39	답	답	452	452	452	452	김*진	인천남동구운연동257-1	6-1
13	519-4	519-4	도	도	161	161	161	34	국	건설교통부	4-1
14	489-32	489-32	답	답	589	589	589	456	김*호	인천중구중산동300	7
15	489-44	489-44	답	답	1,000	1,000	1,000	1,000	김*호	인천중구중산동300	7-2
16	489-31	489-31	답	답	118	118	118	118	김*진	인천남동구운연동257	11
17	489-42	489-42	답	답	625	625	625	625	김*진	인천남동구운연동257	11-2
18	516-7	516-7	구	구	249	249	249	190	국	농림부	9
19	516-10	516-10	구	구	269	269	269	269	국	농림부	9-3
20	487-1	487-1	답	답	122	122	122	29	강*웅	인천남동구만수동 574	10
21	518-1	518-1	도	도	54	54	54	35	국	건설교통부	12
22	486-3	486-3	답	답	961	961	961	783	윤*진	인천남동구논현동563-3논현 주공아파트207동1905호	13
23	486-5	486-5	답	답	862	862	862	862	윤*진	인천남동구논현동563-3논현 주공아파트207동1905호	13-2
24	516-8	516-8	구	구	395	395	395	395	국	농림부	9-1
25	516-12	516-12	구	구	375	375	375	375	국	농림부	9-5
26	459-76	459-76	답	답	743	743	743	670	박*봉	인천연수구동춘동924-3삼성 아파트1동1403호	14

27	459-88	459-88	답	답	1,012	1,012	1,012	1,012	박*봉	인천연수구동춘동924-3삼성 아파트1동1403호	14-2
28	459-78	459-78	답	답	738	738	738	770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15
									구*숙	5밀버른드라이브이토비콕온타 리오캐나다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정*화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29	459-90	459-90	답	답	1,190	1,190	1,190	1,190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15-2
									구*숙	5밀버른드라이브이토비콕온타 리오캐나다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정*화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30	-	459-36	-	답	-	3,921	-	35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구*숙	5밀버른드라이브이토비콕온타 리오캐나다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정*화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31	459-81	459-81	답	답	674	674	674	674	구*희	인천연수구옥련동642-1한국 아파트104동2502호	16
									정*화	인천남동구서창동서창토지구 확정리지구1블럭1롯데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302동1002호	
									구*희	대전서구월평동222한아름아 파트108동906호	
32	459-92	459-92	답	답	1,185	1,185	1,185	1,185	구*희	인천연수구옥련동642-1한국 아파트104동2502호	16-2
									정*화	인천남동구서창동서창토지구 확정리지구1블럭1롯데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302동1002호	
									구*희	대전서구월평동222한아름아 파트108동906호	
33	-	459-41	-	답	-	3,450	-	114	구*희	인천연수구옥련동642-1한국 아파트104동2502호	
									정*화	인천남동구서창동서창토지구 확정리지구1블럭1롯데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302동1002호	
									구*희	대전서구월평동222한아름아 파트108동906호	
34	459-84	459-84	답	답	710	710	710	710	윤*종	인천남동구구월동1404-3	17
35	-	459-46	-	답	-	3,114	-	101	윤*종	인천남동구구월동1404-3	
36	459-94	459-94	답	답	1,177	1,177	1,177	1,177	윤*종	인천남동구구월동1404-3	17-2
37	-	459-50	-	답	-	2,254	-	7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38	459-86	459-86	답	답	472	472	472	472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18

39	459-96	459-96	답	답	1,154	1,154	1,154	1,154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18-2
40	459-85	459-85	답	답	390	390	390	317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19
41	513-4	513-4	천	천	248	248	248	248	국	건설교통부	22
42	513-7	513-7	천	천	278	278	278	278	국	건설교통부	22-3
43	462-13	462-13	답	답	793	793	793	654	김*천	인천부평구부평동139-5	20
44	462-20	462-20	답	답	699	699	699	699	김*천	인천부평구부평동139-5	20-2
45	462-16	462-16	답	답	431	431	431	403	정*화	시흥군소래면신천리545-3	21
46	462-23	462-23	답	답	755	755	755	755	정*화	시흥군소래면신천리545-3	21-2
47	513-5	513-5	천	천	262	262	262	255	국	건설교통부	22-1
48	513-8	513-8	천	천	159	159	159	159	국	건설교통부	22-4
49	462-11	462-11	전	전	588	588	588	495	김*만	인천남동구운연동46 주공아파트 309동 205호	23
50	462-14	462-14	답	답	917	917	917	872	우*호	부천시원미구중동3-55	24
51	462-21	462-21	답	답	99	99	99	99	우*호	부천시원미구중동3-55	24-1
52	-	462-2	-	전	-	2,918	-	8	우*호	부천시원미구중동3-55	
53	489-49	489-49	답	답	9	9	9	9	성*영	부천시중구춘의동211-8	26-1
54	489-37	489-37	답	답	79	79	79	79	성*영	부천시중구춘의동211-8	26
55	491-3	491-3	답	답	4	4	4	4	이*주	인천남동구운연동43-3	2-1
56	-	489-21	-	전	-	3,041	-	135	성*영	부천시중구춘의동211-8	
57	-	489-20	-	전	-	382	-	12	오*희	인천연수구옥련동631원흥아파트102동1005호	
58	489-36	489-36	답	답	741	741	741	675	오*희	인천연수구옥련동631원흥아파트102동1005호	3
59	489-48	489-48	답	답	530	530	530	530	오*희	인천연수구옥련동631원흥아파트102동1005호	3-1
60	489-35	489-35	답	답	382	382	382	256	국	재경부	27
61	489-47	489-47	답	답	218	218	218	218	국	재경부	27-1
62	489-34	489-34	답	답	431	431	431	260	권*희	경기시흥시도창동411-1	28
63	489-46	489-46	답	답	109	109	109	109	권*희	경기시흥시도창동411-1	28-1
64	489-33	489-33	답	답	396	396	396	219	권*희	경기시흥시도창동411-1	29
65	489-45	489-45	답	답	30	30	30	30	권*희	경기시흥시도창동411-1	29-1
66	489-43	489-43	답	답	783	783	783	421	김*호	인천중구중산동300	7-1
67	489-41	489-41	답	답	621	621	621	345	김*진	인천남동구운연동257	11-1

68	489-28	489-28	답	답	642	642	642	348	윤*진	인천남동구논현동505	30
69	489-38	489-38	답	답	162	162	162	162	윤*진	인천남동구논현동505	30-1
70	516-9	516-9	구	구	263	263	263	184	국	농림부	9-2
71	486-4	486-4	답	답	336	336	336	286	윤*진	인천남동구논현동563-3논현 주공아파트207동1905호	13-1
72	516-11	516-11	구	구	374	374	374	374	국	농림부	9-4
73	459-77	459-77	답	답	560	560	560	397	이*원	인천남동구구월동1287-4 경 창빌라 301호	31
									오*이	인천남동구구월동1287-4 경 창빌라 301호	
74	459-87	459-87	답	답	158	158	158	158	박*봉	인천연수구동춘동924-3삼성 아파트1동1403호	14-1
75	459-79	459-79	답	답	352	352	352	201	박*호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34동 1004호	32
76	459-89	459-89	답	답	422	422	422	422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15-1
									구*숙	5밀버른드라이브이토비콕온타 리오캐나다	
									구*숙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정*화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현대 아파트311동1205호	
77	459-82	459-82	답	답	41	41	41	34	이*훈	인천남동구구월동1381-5	33
78	-	459-42	-	답	-	4,551	-	41	이*훈	인천남동구구월동1381-5	
79	459-91	459-91	답	답	653	653	653	653	구*희	인천연수구옥련동642-1한국 아파트104동2502호	16-1
									정*화	인천남동구서창동서창토지구 확정리지구1블럭1롯데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302동1002호	
									구*희	대전서구월평동222한아름아 파트108동906호	
80	-	459-80	-	답	-	28	-	28	구*희	인천연수구옥련동642-1한국 아파트104동2502호	
									정*화	인천남동구서창동서창토지구 확정리지구1블럭1롯데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302동1002호	
									구*희	대전서구월평동222한아름아 파트108동906호	
81	459-93	459-93	답	답	705	705	705	705	윤*종	인천남동구구월동1404-3	17-1
82	-	459-83	-	답	-	224	-	104	윤*종	인천남동구구월동1404-3	
83	-	459-66	-	답	-	294	-	11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84	459-95	459-95	답	답	910	910	910	872	안*진	인천남동구고잔동86-7	18-1
85	513-6	513-6	천	천	250	250	250	250	국	건설교통부	22-2
86	462-19	462-19	답	답	615	615	615	532	김*천	인천부평구부평동139-5	20-1

87	462-22	462-22	답	답	727	727	727	623	정*화	시흥군소래면신천리545-3	21-1
88	462-17	462-17	답	답	495	495	495	465	정*화	경기소래읍신천리545-67	34
89	462-24	462-24	답	답	304	304	304	304	정*화	경기소래읍신천리545-67	34-1
90	462-18	462-18	답	답	129	129	129	110	공	경기도	35
91	462-25	462-25	답	답	1	1	1	1	공	경기도	35-1
92			천	천			6,762	6,810			25
93	489-27	-	답	-	79	-	79	-	문*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2-4	8
계							45,316	41,809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종로2-613호선)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739-5	739-5	전	전	53	53	53	53	정*현	인천남동구만수동1038심익세라 믹아파트103동104호
1-1	739-3	739-3	전	전	9	9	9	9	정*현	인천남동구만수동1038심익세라 믹아파트103동104호
2	산112-5	산112-5	임	임	44	44	44	44	이*평	인천부평구부평동174-5
2-1	산112-3	산112-3	임	임	123	123	123	123	이*평	인천부평구부평동174-5
3	739-6	739-6	전	전	70	70	70	70	김*현	인천남동구서창동 310-1
3-1	739-4	739-4	전	전	117	117	117	117	김*현	인천남동구서창동 310-1
4	816-9	816-9	구	구	194	194	194	194	국	농림부
4-1	816-6	816-6	구	구	47	47	47	47	국	농림부
5	818-7	818-7	도	도	101	101	101	101	국	건설교통부
5-1	818-4	818-4	도	도	3	3	3	3	국	건설교통부
계							761	761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398-8	398-8	전	전	327	327	327	327	송*영	인천남동구서창동374-3

1-1	398-5	398-5	전	전	59	59	59	59	송*영	인천남동구서창동374-3
1-2	398-7	398-7	전	전	58	58	58	58	송*영	인천남동구서창동374-3
2	396-2	396-2	전	전	98	98	98	98	유*혜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224그레빌 아파트102동804호
									이*숙	서울양천구목동911목동신시가지 아파트610동105호
									이*숙	성남시수정구단대동4395미도아 파트2동1403호
									이*엽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오*현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이*관	인천남동구서창동733
									이*경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장*연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278-18행 운빌라202호
									송*욱	인천남구송의동1-69
2-1	396-1	396-1	전	전	42	42	42	42	유*혜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224그레빌 아파트102동804호
									이*숙	서울양천구목동911목동신시가지 아파트610동105호
									이*숙	성남시수정구단대동4395미도아 파트2동1403호
									이*엽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오*현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이*관	인천남동구서창동733
									이*경	인천남동구서창동714
									장*연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278-18행 운빌라202호
									송*욱	인천남구송의동1-69
3	395-4	395-4	전	전	323	323	323	323	이*찬	인천남동구서창동696-10
3-1	395-2	395-2	전	전	39	39	39	39	이*찬	인천남동구서창동696-10
3-2	395-3	395-3	전	전	18	18	18	18	이*찬	인천남동구서창동696-10
4	394-1	394-1	전	전	14	14	14	14	김*순	인천남구도화동 18-74
5	393-5	393-5	답	답	96	96	96	96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 림아파트105동804호
	、	、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 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5-1	393-3	393-3	답	답	18	18	18	18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105동804호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6	518-55	518-55	도	도	45	45	45	45	국	건설교통부
6-1	518-56	518-56	도	도	73	73	73	73	국	건설교통부
6-2	518-46	518-46	도	도	27	27	27	27	국	건설교통부
6-3	518-54	518-54	도	도	10	10	10	10	국	건설교통부
7	392-3	392-3	답	답	223	223	223	223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105동804호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7-1	392-2	392-2	답	답	171	171	171	171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105동804호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8	393-6	393-6	전	전	289	289	289	289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동105동804호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8-1	393-4	393-4	전	전	83	83	83	83	장*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동105동804호
									장*진	서울동대문구회기동65청량리신현대아파트9동403호
									장*춘	인천남구학익동719동아풍림아파트111동1702호
9	519-14	519-14	구	구	27	27	27	27	국	농림수산부
9-1	519-11	519-11	구	구	13	13	13	13	국	농림수산부
10	384	384	전	전	2	2	2	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10-1	384-7	384-7	전	전	16	16	16	1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11	608-1	608-1	도	도	62.2	62.2	62	62.2	공	인천시남동구
12	558-6	558-6	공	공	0.3	0.3	0	0.3	공	인천시남동구

12-1	558-7	558-7	공	공	596.0	596.0	596	596.0	공	인천시남동구
12-2	558-5	558-5	공	공	260.5	260.5	261	260.5	공	인천시남동구
13	607	607	도	도	7.9	7.9	7.9	7.9	공	인천시남동구
13-1	607-1	607-1	도	도	506.7	506.7	506.7	506.7	공	인천시남동구
14	606-1	606-1	도	도	13.4	13.4	13	13.4	공	인천시남동구
15	605-1	605-1	도	도	41.6	41.6	42	41.6	공	인천시남동구
16	603-1	603-1	도	도	48.9	48.9	49	48.9	공	인천시남동구
17	601-3	601-3	도	도	1,252.3	1,252.3	1,252	1,252.3	공	인천시남동구
17-1	601-1	601-1	도	도	41.4	41.4	41	41.4	공	인천시남동구
17-2	601-2	601-2	도	도	25.6	25.6	26	25.6	공	인천시남동구
18	602	602	공	공	2.3	2.3	2.3	2.3	공	인천시남동구
18-1	602-1	602-1	공	공	24.6	24.6	24.6	24.6	공	인천시남동구
계							4,954.7	4,954.7		